

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



총무위원회

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11. 1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6. 11. 2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12. 16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

3. 2017년도 기금개요

- 가. 지방자치법 제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
- 나.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·투명성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음
 - 총괄부서 : 기획감사실
 - 운용부서 : 각 기금관리운용 부서
- 다.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4. 기금운용 계획안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16년말 현재액 ①	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7년도말 조성액 ④=①+②-③	증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합계 (5개)	11,975,286	304,229	448,699	11,830,816	△144,470
사회복지기금	3,865,740	152,248	178,199	3,839,789	△25,951
식품진흥기금	55,632	15,287	3,000	67,919	12,287
중소기업육성기금	6,464,509	110,500	240,000	6,335,009	△129,500
아름예술제진흥기금	500,274	7,504	7,500	500,278	4
체육진흥기금	1,089,131	18,690	20,000	1,087,821	△1,310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

- 사회복지기금은 「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·운영조례」에 의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,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, 노인복지,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음
-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매년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며,
 -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 기준액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,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,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
 -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함
 -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,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등을 지원
 -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수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과 노인의 심심단련 및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

-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
- 여성발전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함
-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말 현재액은 3,865,740천원이며,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2,248천원, 지출 178,199천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,839,789천원으로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함

■ 민원봉사실 식품진흥기금

- 식품진흥기금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,
- 재원조성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
-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·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과, 100백만원 기금 자금 적립 될 때 까지 보조사업만 추진
-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말 55,632천원이며,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,287천원, 지출은 3,000천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은 67,919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

■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 및 「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지원되고 있음
-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며
-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임

-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말 현재액은 6,464,509천원이며,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0,500천원, 지출 240,000천원임.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,335,009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

■ 문화관광과 아림예술제진흥기금

-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「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」에 따라 향토 문화·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,
-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, 기타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음
-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행사비 등 지원
-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말 현재액은 500,274천원이며,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,504천원, 지출 7,500천원임.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00,278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

■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기금

- 체육진흥기금은 「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」에 따라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
- 재원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,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며
- 지원기준은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영역으로 함
- 지원대상은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, 우수선수 육성 사업, 군민 체육대회 개최,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함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현재액은 1,089,131천원이며,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,690천원, 지출 20,000천원임.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,087,821천원이고.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 관리하고 있음

■ **총괄 검토의견**

- 기금 성과분석 결과, 반영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,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
-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과 ‘적립성 기금’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속 여부 검토 필요
- 지방기금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한 지방기금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성 제고
-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권장
(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감)
-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 분석을 시행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7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8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9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